

[일련번호 : 13]

# 양 천 구

## 주 의 요 구

**제 목** 민방위 편성 제외자 관리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내 용**

### 1. 업무개요

○○동은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육·관리하고 있다.

###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고, 1. 군인·경찰공무원 등, 2. 대학 등에 재학중인 학생, 3.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를 민방위 편성 시 제외하되,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심의대상 및 심의, 재심의 규정), 시행규칙 제18조(심사 결정)에 따라, 심사제외대상자(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는 본인의 제외신청 및 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의 법정 제외자의 편성 제외 절차에 따르면 군인, 예비군 등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시에는 직권으로 편성 제외하며, 시스템으로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재직증명서, 학생 등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의 재직(재학) 증명 공문 등을 직장의 장(학교의 장) 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하고, 민방위 편성 담당자는 최초 1회만 징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제외사유 소멸 시 본인이 민방위 편성대상자임을 신고하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에 있어서 신체검사 결과 5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 병역대상자로 군복무 및 예비군 편성이 제외되므로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하고, 6급으로 판정되면 군 복무, 예비군 및 민방위대까지 편성 제외하며, 7급으로 판정되면 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은 심사제외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의 편성제외신청에 따라 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외결정하여야 함에도, 직권으로 시스템에 심사제외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부적정 편성 및 관리 내역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심사 제외 정보(새울)		부적정 편성 및 관리내역
			제외일자	사유	
1			2023.7.11. (심사 제외) 2024.11.8. (재심의)	일상적 정상근무활동 능력 결여(조현병) (의사진단받은 만성허약자)	심의의결 없이 직권으로 심사제외 처리('23.7.11.) '24.11.8. 재심의 의결 완료

###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조치할 사항

#### ○○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주의)